

수원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5738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1.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20. 6.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10. 7. 접수 제105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은 원고에게 10,127,614원 및 그중 2,540,046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9. 자 2014차전186709 지급명령이 2014. 10. 29. 확정되었다.

나. E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20. 6. 11.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D, 피고, F이 있었다.

다. 피고와 D은 2020. 6. 11.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1/3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10. 7. 접수 제10578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켰으므로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인 분할금액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인 분할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분할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철근콘크리트조 59.88㎡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370.1㎡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 370.1 분의 36.65

(수원지방법원 등수원등기소 관할)

